<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4.09.02)

키움OCIO타겟리턴안정형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펀드코드: DW913]

| 투자위험등급 | · 5드그[나 | 으 의허] |
|--------|----------|-------|
| 구시케임능급 | ㆍ ၁등급[닺 | 는 위임] |

| 1 | 2 | 3 | 4 | 5 | 6 |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없음

0.605

0.31

0.80

0.728

75

153

235

412

938

키움투자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 채권 및 대체자산 관련 국내 • 외 집합투자증권에 분산 투자하되,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고, 임금상승률에 상응하는 성과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하므로 시장 상황의 변동성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 재간접 투자위험, 해외자산 등에 투자로 인한 국가위험, 자산배분 전략 수행에 따른 투자위험 및 환율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키움OCIO타겟리턴안정형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정보] | | | | | | | | | | | |
|----------------|---|-------------------------|---------|----------|-------------|------------------|-----|-----|-----|-----|-------|
|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채권 및 대체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분산 투자하되,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 장기적인 목표 수익률(Target Return)을 임금인상률 수준으로 설정하고 목표수익 달성 추구를 위한 자산배분모델 등을 활용하여 국내외 다양한 자산에 탄력적으로 비중을 조절하여 투자함으로써 목표수익률 달성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 자산 등에의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환율변동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외화표시자산의 70±30% 수준을 목표로 환해지 전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환해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해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해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목표수익률(Target Return)은 자산별 장기 기대수익과 위험(변동성) 등을 예측하여 이론적인 자산배분모델을 활용하여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장기적인 기대수익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미래의 확정 수익률이나 보장된 수익률을 의미하지 않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원급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투자기간 및 가임/환매 시점 등에 따라 투자자 별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므로 투자 결정시 투자자의 투자기간 및 투자목적을 반드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투자적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므로 투자 결정시 투자자의 투자기간 및 투자목적을 반드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용시장 상황 및 각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위험을 관리하고 장기 가치상응을 추구하여 운용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급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 | | | | | | | | |
| 분류 |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 | | | | | | | | | |
|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단위: %) (단위: %) *** *** *** *** *** *** *** *** *** | | | | | | | | | | |
| | 29-011 | 판매 수수료 | 총보 수 | 판매 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 합성 총보수• 비용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투자비용 |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 납입금 액의0.6 %이내 | 0.655 | 0.36 | 0.94 | 0.778 | 139 | 222 | 309 | 498 | 1,056 |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 없음 | 0.915 | 0.62 | 1.23 | 1.038 | 106 | 218 | 335 | 588 | 1,338 |
| | 수수료선취- 온라인(A-e) | 납입금 액의 0.3% 이내 | 0.475 | 0.18 | 0.62 | 0.598 | 91 | 155 | 222 | 367 | 798 |

-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합성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합성 총보수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펀드 보수·비용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 |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 |
|----------|----------|------------|-------------|-------------|-------------|-------------|------|
| | 클래스 종류 | 최초 설정일 | 2023.09.03~ | 2022.09.03~ | 2021.09.03~ | 2019.09.03~ | 이후 |
| | | | 2024.09.02 | 2024.09.02 | 2024.09.02 | 2024.09.02 | ŬI∓ |
| | 수수료미징구 | | | | | | |
| | -오프라인형- | 2022.08.24 | 9.50 | 6.37 | | | 6.15 |
| | 기관 등(CF) | | | | | | |
| | 수수료미징구 | | | | | | |
| | -온라인-연금 | 2022.09.05 | 9.26 | | | | 6.13 |
| | 저축(CPe) | | | | | | |
| | 수수료미징구 | | | | | | |
| | -오프라인형- | 2022.09.06 | 9.21 | | | | 6.08 |
| 투자실적추이 | 퇴직연금 | | | | | | 0.00 |
| (연평균수익률, | (CP2) | | | | | | |
| 단위: %) | 수수료미징구 | | | | | | |
| | -온라인-퇴직 | 2022.08.24 | 9.37 | 6.24 | | | 6.03 |
| | 연금(CP2e) | | | | | | |
| | 비교지수 | | | | | | |
| | 수익률 변동성 | 2022.08.24 | 5.32 | 4.48 | | | 4.46 |

- 주1) 비교지수: 없음
-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 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 | | | 운용현황 | | 동경 | 운용경력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성명 | 생년 | 직위 | 집합 | 운용 | 운용 | 용역 | 운. | 용사 | 년수 | | | | | | | | | | | | | | |
| | | | | | 투자 기구수 | 규모 (억원)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21 | | | | | | | | | | | | | | |
| | 책임 | 양주경 | 1979 | 팀장 | 31 | 7,331 | 4.30 | 1.53 | | | 5년 | | | | | | | | | | | | | | |
| | | | | | | 7,001 | 1.00 | 1.00 | 12.45 | 7.05 | 9개월 | | | | | | | | | | | | | | |
| | 부책임 - | 김상미 | 1070 | 1070 | 1070 | 1072 | 1973 | 1072 | 1072 | 1070 F | FITL | 973 팀장 | 1070 FITL | FIZL | 4 48 | _ | 4 | | 483 | | 10.40 | 12.45 | 12.45 | 7.03 | 13년 |
| 운용전문인력 | 十ሣ | 14.9.1 | 19/3 | = 6 | 4 | 403 | 12.43 | 0.20 | | | 6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채권팀 및 자산배분전략팀이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 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지선당을 기하여 구시기 마립되다. 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 | | | | | | | |
| | |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i |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교수아오니 삼고아시기 마랍니다. 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 | | | | | | | |
| 투자자 | 집합투자증권인 |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유의사항 | | 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 | | | | | | | |
| | | 을 하시기 바랍니다. N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 | | | | | | | |
| | |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 | | | | | | |
| | |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 | | | | | | | |
| | |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 | | | | |
| | 투자원본에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 | | | | | | | | |
| | 대한 | │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 │ │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 │ | | | | | | | | |
| | 손실위험 | 시 점도의 귀엽는 선적으로 구자자가 구함하며, 접접구자갑자다 판매외자 등 어떤 등 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 | | | | | |
| | 집합투자증권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이 | | | | | | | | |
| | 가격변동위험 |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 | | | | | | | |
| | |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 | | | | | | | |
| | |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함에 따라 투자대상인 하위 | | | | | | | | |
| | | │집합투자기구의 규약 또는 정관 등을 따르며, 하위 집합투자기구를 직접 통제할 수 │ │ │ 없습니다. 또한, 투자대상 하위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 │ | | | | | | | | |
| | 지간접 투자 위험 | 포트폴리오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 | | | | | | | |
| | |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 | | | | | | | |
| | | 주로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 | | | | | | | |
| | 파생상품 |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 | | | | | | | |
| | 투자위험 |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 | | | | | | | |
| | |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합니다)에 투자할 | | | | | | | | |
| | |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외시장의 거래는 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에 비하여 정부의 | | | | | | | | |
| | | │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정산이행보증과 같이 장내거래 │ │ │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들이 장외거래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 │ | | | | | | | | |
| 주요투자 | 영기파영영품 투자위험 |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포모모자들이 영되기대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다지, 장외파생상품투자에 투자시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 | | | | | | | | |
| 위험 | 7-71116 | 투자자금 전액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등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훨씬 | | | | | | | | |
| ··- | | 큰 신용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외시장은 통상 유동성이 부족하므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를 종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해외 투자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 | | | | | | | |
| | |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 | | | | | | | |
| | 환율변동에 |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환율변동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물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 | | | | | | | |
| | 따른 위험 | 이루어지는 등 환혜지를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더라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 | | | | | | | |
| | |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현재 환혜지 대상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 | | | | | | | |
| | | 대해서는 환해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환해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 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 | | | | | | | |
| | | 외국통화 대비 낮아지면(환율상승)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을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경우 | | | | | | | | |
| | | 가치상승이 발생하나 환혜지로 인해 이에 상응하는 손실이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환율 | | | | | | | | |
| | | 상승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변동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외국 통화 | | | | | | | | |
| | | 대비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도(환율하락) 원화환산 시 투자자산의 손실만큼 환해 | | | | | | | | |
| | 환혜지에 따른 | 지 부분이 보전해주게 되어 마찬가지로 환율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원화 가치 변 | | | | | | | | |
| | 위험 | 동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환해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해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부드 사회 또는 해단 통합이 거래가 이시저 호은 사다기가 시작에서 거래되지 모 | | | | | | | | |
| | |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 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혜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 | | | | | | | |
| | | 에드 성영에 되는 중 현에서 현기 18에 발가용한 성영에 되면할 수 있습니다. 한 | | | | | | | | |
| | | 편, 환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보유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헤지 비율이 달라질 수 있 | | | | | | | | |
| | | 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등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현황을 | | | | | | | | |
| | | 고려하여 환해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혜지를 수행하지 않 | | | | | | | | |

| | | 1 | | | | | | | |
|--------------|--|---|-----------------------|---|--|--|--|--|--|
| | | 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발생합니다. | 환헤지를 수행하는 |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 | | | | | |
| | | ※환위험관리: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하는 주요통화(미국달러 등)자산에 대해 환혜 | | | | | | | |
| | | 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목표 환혜지 수준: 외화자산 순자산평가액 70±30%) | | | | | | | |
| | | 환혜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 | | | | | | | |
| | | 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 | | | | | | |
| | | | | 울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 | | | | |
| | | | | 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 | | | | | |
| | | | – | 동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 | | | | |
| | | 와 같은 경우 환혜지를 실시하면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 | | | | | | | |
| | | + | |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해외 채권, 장외파 | | | | | |
| | | | | 구사증권에서 구사하는 해외 세권, 영외파 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 | | | | |
| | 신용 위험 | | | 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 | | | | | |
| | | 1 | 른 환매연기로 인한 |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 | | | | |
| | | │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펀드노 헤이에 트지호 | 하 스 이기 때무에 |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 | | | | |
| | | | | 가시네영국가의 시청, 영지 및 경제영광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자 | | | | | |
| | 국가/정치/제 | 1 9 | | 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해 | | | | | |
| | 도의 위험 | 1 | | 한, 해당국가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 | | | | |
| | | | · | 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 | | | | |
| | |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 | | 한국한 구성당 구국으로 한한 6시시교의 | | | | | |
| | | 이 투자신탁은 주로 | 국내・국외 주식 | 및 채권관련 증권관련 집합투자기구의 | | | | | |
| | | | 방황에 따라 각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 | | | | | |
| | 자산배분위험 | │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이 │ │ │ 시장의 움직임과 괴리가 생기거나 투자한 특정 자산의 손실이 커지는 경우 등 여러 │ │ | | | | | | | |
| | | 지정의 움직임과 되다가 정기기다 구자한 측정 자연의 곤설이 기자는 경우 중 여름으로 있다면 투자신탁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손실이 예측한 규! | | | | | | | |
| | |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 | 다. | | | | | | |
| | |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 | | ·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 | | | | | |
| | |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 | | 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 | | | | | |
| | (D+2)에 중고 하여 매입 | 1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 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8영업 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 | | | | |
| 매입방법 | | 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 | | | | |
| | |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 환매방법 | 지급 | | | | | |
| | 4영업일(D+3) |)에 공고되는 | 완매당립 | ·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 | | | |
| | 기준가격을 적 | 덕용하여 매입 | | 환매청구일로부터 5영업일(D+4)에 | | | | | |
| | | | |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어어의(Dio)에 관려내고 등의 | | | | | |
| 환매수수료 | · 해당사항 없음 | <u>)</u> | | 9영업일(D+8)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 | | | | |
| | | | | · 항매대금을 지급 | | | | |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 | ww.kiwoomam.com)/ รี |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 | | | | |
| | |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 ! 집합투자기구 지 | ·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 | | | | |
| | 산정방법 |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 | | | | | |
| 기준가 | | · · · · · · · · · · · · · · · · · · · | | 심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 | | | |
| | | | | iwoomam.com) · 판매회사 · ofia.or.kr)에 게시합니다. | | | | | |
| | | 한국교평구사업의 한덕기 | | | | | | | |
| | 구분 지하트지기구 : | 지하트지기그 다게에 나느 | 과세의 주 | 요내용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 | | | |
| | | | | | | | | | |
| 과세 | 과세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 | | | | | | | |
| | | | | 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 | | | | |
| | - |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 종합과세 됩니다 | | | | | | |
|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집합투자업자 | 키움투자자산운 | 용㈜ 대표번호 : 02-789 | -0300 / 인터넷 큐 | 홈페이지 : www.kiwoomam.com | | | | | |
| 모집기간 | | 계속 모집 가능 | 10조좌(1좌는 1원) | | | | | | |
| 효력발생일 | 2024년 09월 2 | | 존속기간 |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 | | | | |
| 판매회사 참조 | | | | 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 | | | | |
| |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 | | | | | | | |

| |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 | | | | | | |
| | 매경로- | -기타 펀드특성 | 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 | | | |
| | 같습니다 | | | | | | |
| | 종 | 류(Class)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 | |
| | | 수수료선취 (A)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 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 니다. 따라서 약 2년 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 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개월 | | | | |
| | 판매 수수료 | 수수료후취 | 일정 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 | | | |
| | | 수수료미징구 (C)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개월이 경과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2년 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 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개월 | | | | |
| | | 온라인 (e)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 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판매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 | |
| | 0+ | 온라인 슈퍼 (S)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 (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말합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
| | | 무권유 저비용(G) |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 | | 개인연금 (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 | 기타 | 퇴직연금 (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 | | | |
| | | 퇴직연금 (O)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의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 | | 기관 (F) |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 | | 랩(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특정금전신탁계약,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등을 통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 | *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 나.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kiwoomam.com)
-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kiwoomam.com)